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우재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857

발의연월일: 2024. 12. 23.

발 의 자: 우재준 · 서천호 · 이성권

김소희 • 안상훈 • 박충권

인요한 • 진종오 • 서일준

권영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운동을 금지하고, 이에 따른 공무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집행을 목적으로 하고있음.

그러나 장관의 보좌관 등의 특수한 별정직 공무원 및 일반임기제,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임용될 때 정당 가입 여부를 명확 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, 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 견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을 임용할 때 관련 자료 및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에 정당을 추가함으로써,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책임을 높이고 능률적인 업무 수행을하게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의3).

법률 제 호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3제1항 중 "공공단체"를 "공공단체·정당"으로 하고, 같은 조제2항 중 "기관은"을 "기관 및 정당은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8조의3(관계 기관 등에 대한 | 제8조의3(관계 기관 등에 대한 | | |
| 협조 요청) ① 인사혁신처장은 | 협조 요청) ① | | |
|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| | | |
| 필요하면 행정기관· <u>공공단체</u> , | <u>공</u> 공단체 • | | |
| 그 밖의 관련 기관에 자료ㆍ정 | <u>정당</u> | | |
| 보의 제공이나 의견 제출 등의 | | | |
|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| | | |
|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| ② | | |
| 받은 <u>기관은</u> 특별한 사유가 없 | <u>기관 및 정당은</u> | | |
| 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| | | |